

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 신규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2조(부서구분) 연구업무수행의 관장부서는연구지원 총괄부서(산학협력단)와 연구지원 단위부서(학과 및 연구업무지원 능력이 있는 부설연구소 등)로 구분한다.	제2조(부서구분) 연구업무수행의 관장부서는연구지원 총괄부서(산학협력단)와 연구지원 단위부서(학과 및 연구업무지원 능력이 있는 부설연구소 등) 및 운영지원부서(구매자산, 검수, 재무회계, 감사)로 구분한다.	- 산단내 운영지원부 신설(2016.5)에 따른 추가